

#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상반기 회의

## 회의록

담당	위원장
이재주	

일시	2015. 3. 18(수) 16:00
장소	대학본부 3층 정책자문위원회실

협조 : 시설과장



### □ 안건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검토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

### □ 참석인원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 총 10명중 8명 참석

### □ 회의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 오용식 위원 : 연구실 안전관리 외에 강의실 안전관리도 논의가 필요함
  - 위원장 : 연구실안전관리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강의실의 안전관리와는 차이가 있음
  - 김인유 위원 : 개정안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분야가 현행보다 축소되어 개정됨으로 상위법안 및 타대학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길경석 위원 : 과학기술분야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됐는지 확인 필요함
  - 장재수 위원 : 과학기술분야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하며 우리 대학교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김종수 위원 : 개정안 제1조 목적에도 과학기술분야가 있는데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는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길경석 위원 : 제3조 8호의 문안이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함
  - 김인유 위원 : 개정안 제1,2조의 과학기술분야는 상위법을 인용함을 확인함
  - 김종수 위원 : 제1,2,3조는 개정안을 적용하고 4조부터 논의가 필요함
  - 시설과장 : 금번 규정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적사항 중에 규정 개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할 것임
  - 김준영 위원 : 제3조의 9,10호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보다 상위에 속해있으면 앞뒤 순서가 바뀌어야 함
  - 김준영 위원 : 제3조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정의에서 총장을 보좌하고란 표현은 수정하여 개정이 필요함
  - 위원장 : 규정개정은 교무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함
  - 시설과장 : 규정을 우리대학 실정에 맞게끔 수정·보완하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먼저 보고 후에 규정개정(안)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

- 위원장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나 시스템 구축에 찬성 여부를 결정이 필요함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은 약5,500명이고 신규교육은 약1,500명이 안전교육 대상자이며, 건강검진 대상자, 안전점검 대상 연구실 등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시스템 구축 시에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장비, 기타 시설물을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함
- 이건수 위원 : 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지, 시스템 구축은 어떤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 필요함
- 시설과장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산학협력단 안전관리비 6,1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제안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위원장 :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타대학의 사례를 조사하고 다른 종류의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조사가 필요함
- 시설과장 : 제안 공모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음
- 김종수 위원 : 연구실 안전관리 시설예산은 확보 여부와 시설보수 부분 예산 확보 현황이 중요함
- 시설과장 : 산학협력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

붙임 참석자 명단 1부. 끝.